

#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0일
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영희,  
김용석, 김제리, 서윤기,  
신정호, 양민규, 이상훈,  
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  
장인홍, 채유미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수 인력이나, 코로나19와 저출생 등의 위기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임.
-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,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. 이에,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22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 및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시장은          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          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          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           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11. (생   략)</p>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          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           소요되는 비용</u>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